

『구미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2. 제안 이유

현행 하수도 요금이 처리원가에 미치지 못하여 년차적 현실화로
기채상환 및 시설투자사업비 등 부족 재원을 확충하며, 공기업의
독립채산성을 실현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하수도사용료를 현행 요금수준에서 업종별 평균 15.1% 인상
(안 별표1)

4. 참고사항

- 「지방자치법」 제139조(사용료의 징수조례 등)
- 「하수도법」 제65조(사용료 등)
- 「지방공기업법」 제22조(요금) 및 「지방공기업법 시행령」 제2조의2
(요금에 관한 규정의 준용), 제18조(요금의 산정방식)
- 지방상수도 요금산정요령 (행정자치부 예규 180호)

5. 검토의견

- 본 개정 조례안은 하수도 사용료를 현행 요금 수준에서 업종별
평균 15.1% 인상하고자 하는 안으로서

- 제121회 정례회(2006년 12월)시 39.4% 인상안을 상정하였으나 과도한 인상율로 인한 시민들의 부담감 과중 등을 이유로 15.2% 인상하는 안으로 가결한 바 있음.
- 하수도 요금이 처리 원가에 미치지 못하여 기채상환 자금 확보 및 노후관 교체, 투자재원 확보 등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인상은 불가피한 것으로 보여짐.
- 다만, 어려운 지역경기 등을 감안할 때 서민 가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신중한 검토가 요구됨.

하수도 요금 인상안 대비표

업종	사용단계 (m ³)	사용료(천원) ('07년 1~8월)	현행		개정안		인상		사용료대비 점유율 (%)	비고
			요금	가중치	요금	가중치	금액	비율		
	총평균	25,871,031	253.5		291.9		38.4	15.1%		
가정용	업종 평균(합계)	3,787,959	156.4	0.62	215.0	0.74	58.6	37.5%	100.0%	
	0~20(1단계)	3,300,332	150	1.00	210	1.00	60	40.0%	87.1%	
	21~30(2단계)	188,794	200	1.33	310	1.48	110	55.0%	5.0%	
	31이상(3단계)	298,833	450	3.00	450	2.14	0	0.0%	7.9%	
일반용	업종 평균(합계)	3,216,453	347.5	1.37	436.2	1.49	88.7	25.5%	100.0%	
	0~100(1단계)	1,306,233	280	1.00	350	1.00	70	25.0%	40.6%	
	101~300(2단계)	687,300	350	1.25	440	1.26	90	25.7%	21.4%	
	301~1000(3단계)	531,620	430	1.54	530	1.51	100	23.3%	16.5%	
	1001~2000(4단계)	260,630	550	1.96	640	1.83	90	16.4%	8.1%	
	2001이상(5단계)	430,670	650	2.32	750	2.14	100	15.4%	13.4%	
욕탕용	업종 평균(합계)	1,038,200	784.5	3.09	803.9	2.75	19.4	2.5%	100.0%	
	0~1000(1단계)	232,877	590	1.00	600	1.00	10	1.7%	22.4%	
	1001~1500(2단계)	96,897	690	1.17	710	1.18	20	2.9%	9.3%	
	1501~2000(3단계)	84,026	800	1.36	820	1.37	20	2.5%	8.1%	
	2001이상(4단계)	624,400	920	1.56	950	1.58	30	3.3%	60.2%	
산업용	업종 평균(합계)	17,828,420	265.1	1.05	289.7	0.99	24.6	9.3%	100.0%	
	톤당(1단계)	17,828,420	270	1.02	290	1.00	20	7.4%	100.0%	

※ 단, 가중치는 2007년 1월~8월 기준임